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7
----------	----

2022년 9월 2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종환 의원(찬성의원 15명)
- 나. 제 안 일 : 2022년 8월 25일
- 다. 회 부 일 : 2022년 9월 2일
- 라. 상 정 일 :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2년 9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중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바우처 지급 근거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2022. 9. 7. ~ 9. 1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3항은 「청년기본법」 1)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 「청년기본법」 제23조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년기본법 :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이용권 지급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현행 조례 제11조는 이미 시장에게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 마련을 위한 이용권 지급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 방안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후속 조치가 동반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공약사항²⁾인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추진계획(안)〉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 ※ 시장 공약 - 서울시 모든 19세 청년에게 연간 30만원의 문화바우처 지급

□ 추진방향

- 만 19세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문화복지의 균형적 수혜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 생활비용 부담 완화 및 문화기본권 보장
- 기초 공연예술문화분야의 청년층의 관람확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실연무대 확대 및 공연예술분야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민선8기 정책기조(약자와의 동행, 하후상박 구조) 반영한 소득요건 적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생애1회 지원)

사업연도	'23	'24	'25	'26
전체 인원*	83,511명('04년생)	76,343명('05년생)	71,746명('06년생)	75,123명('07년생)
중위소득 150% 이하**	61,297명	56,036명	52,662명	55,140명
수혜인원***	52,102명	47,631명	44,763명	46,869명

* 전체 인원 ('22.4월 통계청 기준) : 만 19세 서울 거주 국민 + 만 19세 서울시 등록 외국인

**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소득계층 인구비율

(2020년 기준 소득분배지표 적용, 통계청)

*** 수혜인원 : 통합문화이용권 최근 4개년 평균 수혜율(83.25%) 반영한 수혜율(85%) 기준 적용

- 지원분야 : 공연·전시 관람(미술, 클래식, 전통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등) ※ 대중음악 콘서트 제외
-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 문화바우처(카드) 지급

2) 시장 공약 - 서울시 모든 19세 청년에게 연간 30만원의 문화바우처 지급

-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은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므로 만 19세 청년에게만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7호 생략)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매칭사업³⁾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⁴⁾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어, 수혜대상 청년들에게 중복지원이 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실적>

○ 계층 및 세대별 발급 및 이용현황

(단위: 천원, 매, %)

계층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발급매수	240,166매 (70%)	101,078매 (30%)
이용금액	20,603,454천원 (69%)	9,066,123천원 (31%)

3) 매칭사업 :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단체들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해 벌이는 사업이며, 법령으로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이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은 줄어듦. <출처:한국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

4)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총사업비 : 49,689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비 31,892백만원(64%), 시비 17,797백만원(36%)]

세대별	아동·청소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6세 이상 ~ 10대	20 ~ 30대	40 ~ 50대	60대 ~
발급매수	47,766매 (14%)	50,972매 (15%)	99,076매 (29%)	143,331매 (42%)
이용금액	3,154,969천 원 (11%)	4,749,561 천원 (16%)	9,777,530 천원 (33%)	11,987,618 천원 (40%)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제출자료

- 한편, 문화본부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이 각각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과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차별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각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할 것임

구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패스
사업목적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 및 최저한의 문화생활 보장	청년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50,570명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52,102명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22. 9월부터 11만원 지원)	1인당 20만원 ⇒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의 경우 60% 이상이 7만원 이상의 관람 비용 소요(출처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 일회성 관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책정
지원분야	문화, 체육, 관광 분야 ⇒ 도서, 교통 등 특정 분야 소비 편중 현상 나타남	문화예술분야 공연·전시 관람 지원 ⇒ 도서, 영화, 대중음악 콘서트 등을 제외하여 청년의 균형적인 문화소비 장려 및 공연예술 분야의 수요·공급 선순환 구조 확립 기대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7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5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김기덕, 김원중, 김지향,
김춘곤, 남창진, 문성호,
박 석,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아이수루, 이영실,
이종배, 이효원, 황유정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바우처 지급 근거에 대해 규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쁨법 제23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 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 을 지급할 수 있다.</u>

문서 번호

202208170000000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이종환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2.08.17.

회신일 : 2022.08.22.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3항의 이용권 등 지원 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개연성이 있는 예산의 추계는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합리적, 경제적 추계는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층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통합 문화이용권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수혜대상에 저소득 청년층이 포함된 약 30만명에 대하여 지원중 임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

(단위: 천원)

통계목	예산
소계	49,689,048
○ 문화누리카드 발급비	45,050,700
○ 인건비	78,078
○ 운영경비	55,200
○ 문화누리카드 발급비	4,505,070

- 조례안 제16조제3항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문화이용권의 적극적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서울시 청년층을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기준('19세 이상 34세 이하')상 2022.7현재 통계청 행정구역별 주민등록 인구상 청년인구는 2,244,293명이며, 연간 10만원(서울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준)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최근 4개년 평균 수혜율 83.25%(문화정책과 내부 추산자료)을 적용하면, 연간 1,86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예산의 제약으로 지급대상의 한정이 불가피한데, 법상 청년 연령의 포함 범위(아래 ※ 이하 상술), 수혜대상에 중·상위소득 계층 청년의 포함여부, 취업 및 미취업 여부 등

따라 수혜액이 다르며, 이 과정에서 보편적·선별적 복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물론 수혜자인 청년 개개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실제 혜택액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 과정에서 정치적·정책적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경제적·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아동 18세미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 「민법(성년 19세이상)」 등에서도 대상 연령기준을 규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과장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팀장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분석관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